

#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72-1호 2003년 9월 08일(월)

## 제목1: ☐ 협회소식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임시회의를 9월 19일, 23일 양일중 열기로 하였습니다.  
확실한 일정과 세부사항은 추후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 제목2: 가축도체 운송 차량 3.5t 이상 도심진입 '허가증' 받으면 가능

-업자들 잘몰라 작은차에 쓸어 반입 '과태료'-

◆현황=이같은 사례는 가축 도체를 도축장에서 식육점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도심권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차량에 도체를 매달면 끝부분이 적재함 바닥에 달게 돼 빠가 부러지는 등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 보통 2.5~3.5t 차량의 적재함은 내부에 도체를 매달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실제 높이가 160~185cm로 낮아진다. 따라서 도체 중량이 70kg을 넘는 돼지 도체 등을 매달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도체를 적재함에 매달지 않고 쌓은 채 운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어긋나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 된다. 고기를 쓸어서 운반할 경우엔 도체에 냉기가 전달되지 않고 미생물 증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체를 매달아 운송해야 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입장이다. 어떤 경우든 품질이 떨어진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해결책=확인 결과 경찰청은 3.5t 이상의 화물차량이 도심에 진입할 때는 통행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한구역통행허가신청서·사업자등록증·자동차등록증·운반계약서등의 서류를 갖춰 해당 지방경찰청민원실에 신청하면된다. 그러나 서울·인천 등 차량의 도심 진입이 제한되는 지역을 2곳 이상 통행하려면 각각의 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통행허가증을 신청하고 이유가 타당할 경우 7일후 처리가 돼 도심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발췌: 농민신문

## 제목3: 축산관련단체, 축산국 폐지 강력 대응

- 축산 3개 협의회 "축산국폐지반대범축산인추진위원회" 구성
- 전국에 플래카드 게시, 100만 서명운동 등 전개

농림부 축산국 폐지를 막기 위한 축산관련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펼쳐진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와 전국협동조합장협의회(회장 우윤식),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회장 고영두) 3개 단체는 9월 2일 축산관련단체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축산국 폐지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축산국폐지반대범축산인추진위원회"를 구성,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축산국폐지반대범축산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중추절 전에 시군, 읍면 단위로 축산국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전국적으로 게시하고, 또 축산인을 중심으로 "축산국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지역 축협, 각 단체별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농림부 개편을 주도하는 정부 혁신위원장에 초청공문을 발송, 축산인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축산국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은 오는 9월 말까지 계속되며, 각 지역 축협과 생산자단체 지부(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된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는 지난 8월 8일 정부의 조직개편 계획 중 축산국의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공동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전국 협동조합장협의회가 가세해 추진위를 구성하고 전국적인 반대운동 추진함으로써 축산인의 뜻을 정부에 강하게 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발췌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우리 협회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이며 아래의 플래카드 내용중 하나를 골라 도축장 주변에 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축산국 폐지 웬 말이냐? 축산농가 다 죽는다.
2. 축산국 폐지는 축산업 말살정책.
3. 축산물 수입개방 모자라 축산국 폐지하나?

#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72-2호 2003년 9월 08일(월)

## 제목4: 도축장 HACCP적용 및 운용실태 점검 결과

-농림부는 금년 7.1부터 전국 소, 돼지, 닭 도축장에 대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가 전면의무시행됨에 따라, 시·도별로 도축장에 대한 일제점검('03.7.1~8.14)을 실시하고, HACCP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도축장 59개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경고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에 실시한 시도별 일제점검내용은 HACCP의무적용도축장 162개소 중 65개소를 점검함
  - 금년 6월 이전에 HACCP운용도축장으로 지정 받은 도축장 83개소 중 73개소를 점검대상에서 제외
  - ※ 83개소 중 10개소의 돼지라인에 대해서는 HACCP을 운용하는 것으로 기인정받았으나, 소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여 금번 점검 대상에 포함
  - 휴·폐업중인 도축장(22개소) 및 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도축장(2개소)도 금번 점검에서 제외
- 점검결과 65개소 중 3개소는 HACCP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HACCP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도축장 62개소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행정처분을 하였음
  - 경고조치(45개소) : HACCP기준서를 작성하였으나, 운용이 미흡한 도축장
  - 영업정지 (14개소) : HACCP기준서도 작성치 않고, 운용도 하지 않은 도축장
  - 행정조치유보 (3개소) : 현지실사결과, 시설 등이 완료되어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으로 운영실태를 당분간 평가한 후 HACCP적용 도축장으로 확인서 발급예정

□ 농림부는 도축장 HACCP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축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ACCP을 시행하지 않은 도축장에 대해서 11~12월중에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
- 폐업, 휴업, 영업정지 도축장의 불법영업 등 법률회피행위의 집중단속
-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 및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교육실시
- 단체급식업소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HACCP제품사용 홍보로 도축장 및 가공장 HACCP적용 확대유도

TEL 031-391-9767,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FAX 031-395-6661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